

# 2022학년도 교내장학 운영 세부 계획 및 1학기 교내장학금(4차) 신청 안내

2022-07-29  
학장특지. 장학위원회

연번	장학 성격	구분	기준금액	선발기준/제출서류	1차 등록대체	2차	3차	4차	비고	비고	신청 방법
						05.31	06.29.	8.16			
1	등록금	교직원 장학	수업료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발기준: 본교 재직 중인 교직원 또는 직계가족(배우자포함)</li> <li>- 교직원의 근무(계약) 기간을 참고하여 심사 후 수혜여부 결정</li> <li>※ 수혜기준: 전공심화과정 교직원이 중도 퇴사(입사)하는 경우 퇴사(입사)일이 수업일수 1/2 초과시 전액 수혜 (이외 수업일수는 장학위원회 심사를 통해 확정)</li> <li>■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직원 본인 : 재직증명서</li> <li>- 교직원 직계가족: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교직원의 재직증명서</li> <li>* 신규(복학)장학생 서류제출 필수, 복학으로 인한 갑연 누락자 학과 신청</li> </ul> </li> </ul>	●	● (누락자)			★계속장학	●	학생처 선발
2	등록금	다문화장학	1,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발기준: 학생(한국국적)이 다문화 가정의 일원인 자 <b>※배우자는 제외</b></li> <li>■ 제출서류: 가족 중 외국인임을 증명가능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1부</li> <li>※ 제출서류는 기본증명서만 제출가능 주민등록등본, 여권 서류 인정 불가</li> </ul>		●				●	학과 신청
3	등록금	보훈장학금	수업료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발기준: 국가유공자 자녀, 5·18민주유공자 자녀, 특수임무수행자 자녀 등의 대학 수업료 지원</li> <li>- (교외) 경기남부보훈지청 교부금</li> <li>- (교내) 국제대학교 장학금</li> <li>■ 제출서류: 대학수업료면제 대상자증명서(보훈지청발급)</li> <li>■ 유의사항: 증명서상 "이미 면제받은 수혜내역"의 입학금, 학기수 확인 필요</li> <li>- 신입생: 입학금 50%, 수업료 50%</li> <li>- 재학생: 수업료 50%</li> </ul>	●	● (누락자)			★계속장학	●	행정 부서 선발
4	등록금	특한이탈주민장학	수업료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발기준: 북한이탈주민 재학생</li> <li>- (교외) 남북하나(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li> <li>- (교내) 국제대학교 장학금</li> <li>■ 제출서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통일부발급)</li> <li>※ 증명서상 "비고"의 수혜 횟수, 전이기간 및 횟수 등 확인 필수</li> <li>- 신입생: 입학금 50%, 수업료 50%</li> <li>- 재학생: 수업료 50%</li> </ul>	●	● (누락자)			★계속장학	●	행정 부서 선발
5	등록금	신입생 학과최우수장학 (총상)	수업료100% (입학학기1회)	■ 선발기준: 정원내 입학자 중 전공별 학과 수석		●				●	입시처 선발
6	등록금	신입생 입학성적우수장학	수업료 50% (입학학기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발기준: 학과별 수시, 정시 정원내 최초 합격자 중 상위 30% 해당자</li> <li>* 검정고시 및 외국고교 출신자 제외</li> </ul>		●				●	입시처 선발
7	등록금	신입생 평택사랑장학금	1,000,000 (입학학기1회)	■ 선발기준: 평택 지역 고등학교 출신 졸업(예정)자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 중 입학당시 (2022.3.1.기준) 평택 지역 거주자		●				●	입시처 선발
8	등록금	신입생 지역인재장학	1,000,000 (입학학기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발기준: 서울, 인천, 경기도 이외의 지역 고등학교 출신자 중 학과별 수시, 정시 정원내 최초 합격자 중 상위 50% 해당자</li> <li>* 검정고시 및 외국고교출신자 제외</li> </ul>		●				●	입시처 선발
9	등록금	신입생 연계·자매·MOU 협약 장학	500,000 (입학학기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발기준: 연계·자매·MOU협약 기관(고교, 학원, 협회, 단체 등) 출신자 중 학과별 수시, 정시 정원내 합격자</li> <li>* 2021년도 이후 협약체결 고교(협약체결 시 기간을 명시하도록 함)</li> </ul>		●				●	입시처 선발
10	등록금	신입생 전문대졸전형장학	300,000 (입학학기1회)	■ 선발기준: 정원외 전문대졸전형장학 입학자		●				●	입시처 선발
11	등록금	신입생 농어촌전형장학	300,000 (입학학기1회)	■ 선발기준: 정원외 농어촌출신전형 입학자		●				●	입시처 선발
12	등록금	전공심화장학	수업료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발기준: 전공심화전형으로 입학한 학생</li> <li>- 신입생: 입학금 100%, 수업료 30%</li> <li>- 재학생: 수업료 30%</li> </ul>	●				★계속장학	●	행정 부서 선발
13	등록금	편입학장학	수업료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발기준: 편입학전형으로 입학한 학생</li> <li>단, 2021학년도 "전기편입학(특별)로입학한광양보건대학교간호학과의입학금만 갑연 함(사후수업료감면없음,계속장학도제외)</li> <li>* 관련공문: 입시홍보서 참조-00127(2021.2.18.)</li> <li>- 신입생: 입학금100%, 수업료50%</li> <li>- 재학생: 수업료50%(광양보건대학교편입생제외)</li> </ul>	●				★계속장학	●	행정 부서 선발
14	등록금	평생학습육성장학	수업료30%	■ 선발기준: 신입생 중 만 25세 이상인 성인학습자(만학도)	●				★계속장학	●	입시처 선발
15	등록금	신입생 우수인재장학	1,000,000 (입학학기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발기준: 1. 어학우수: 국가공인시험만점기준60%이상점수취득자및아이엘츠5이상, JLPTN3이상, HSK4급이상, HSKK중급</li> <li>* 입학일2022-03-01기준유효한자격증에한함</li> <li>* 해당과목어플모국어외하는외국인학생은해당어학자격증으로장학금신청불가</li> <li>2. 능력우수: 신입학 이전 교과 재학기간 중 각종 전국대회 입상자 (1등, 2등, 3등 까지)</li> <li>■ 제출서류: 자격명과유효기간이명시되어있는자격증사본, 전국대회수상경력증명서(상장, 메달등)</li> </ul>		●				●	입시처 선발
16	생활비	후배추천장학	3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발기준: 본 대학 재학생 중 지인을 추천하여 신입생으로 등록시켜 대학발전에 기여한 재학생</li> <li>■ 제한사항: 재학생 1명당 최대 3명의 신입생을 추천가능</li> <li>※ 최대 지급금액 90만원(30만원*추천등록자3명)</li> <li>① 선배 재학생의 학적상태가 2022-1학기 "재학"인 경우만 지급</li> <li>- 선배 재학생이 휴학, 자퇴인 경우 불가 *교내장학 규정상 지급 불가</li> <li>② 선배 재학생이 다음의 자격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 불가</li> <li>&lt;교내장학금 규정 제14조 자격제한&gt;</li> <li>① 정규학기 초과(졸업탈락자) 지급 불가</li> <li>②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미만인 자</li> <li>③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미만인 자(18학점 이전 15학점, 이후 12학점)</li> <li>④ 후배 한명을 다수의 선배 재학생이 추천 불가</li> <li>→ 한 명의 선배 재학생만 추천 가능함 (후배, 선배 관계가 1:1)</li> <li>⑤ 추천된 후배 신입생은 우리학교 2022-1학기 최종등록하여야 함</li> <li>⑥ 신입생 기간 후배추천 불가(예: 2022학년도 전공심화 신입학, 편입학 등으로 입학한 학생이 신입생 추천 불가)</li> </ul>			● (누락자)			●	입시처 선발
17	등록금	외국인인재장학	수업료 30% (입학학기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발기준: 정원내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 중 성적 및 인성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li> <li>* 유의사항: 외국인인재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입학장학 종류 수혜 불가</li> <li>- 신입생: 입학금 100%, 수업료 30%</li> <li>- 재학생: 토픽(TOPIK)성적과 인성이 우수한 학생 추천</li> <li>↳ 수업료 30% : 토픽(TOPIK) 3급</li> <li>↳ 수업료 40% : 토픽(TOPIK) 4급</li> <li>↳ 수업료 50% : 토픽(TOPIK) 5급 이상</li> <li>* 갑연일(추지급자는 신청일)기준</li> <li>토픽(TOPIK) 자격 유지(유효)여부 확인</li> </ul>	●	● (누락자)			★계속장학	●	학생처 & 국제교류센터 협조
			수업료 40%		●					●	학생처 신청 필요
			수업료 50%		●					●	
			수업료 30% (입학학기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발기준: 외국인특별전형 학생 중 성적 및 인성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li> <li>* 유의사항: 외국인특별전형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입학장학 종류 수혜 불가</li> </ul>	●				★계속장학	●	학생처 & 국제교류센터 협조

# 2022학년도 교내장학 운영 세부 계획 및 1학기 교내장학금(4차) 신청 안내

2022-07-29  
학장복지, 장학위원회

연번	장학 성격	구분	기준금액	선발기준/제출서류	1차	2차	3차	4차	비고	비고	신청 방법	
					등록대체	05.31	06.29.	8.16				
18	등록금	외국인특별전형장학	입학금 100%	- 신입생 : 입학금 100%, 수업료 30% - 재학생 : 토픽(TOPIK) 성적과 인성이 우수한 학생 추천 ↳ 수업료 30% : 토픽(TOPIK) 3급 ↳ 수업료 40% : 토픽(TOPIK) 4급 ↳ 수업료 50% : 토픽(TOPIK) 5급 이상 * 갇면일(후지급자는 신청일) 기준 토픽(TOPIK) 자격 유지(유료) 여부 확인	●	(누락자)			국제교류센터 협조		해당자 신청 필요	
			수업료 30%									
			수업료 40%									
			수업료 50%									
19	생활비	성적우수장학 1종 (생활비)	1,000,000	■ 선발기준 : 과(전공)별 수석 - <b>등록인원 15명 이상</b> * 등록인원 15명 미만 과(전공) 제외, 전공심화 제외 ■ 선발기준 : 과(전공)별 수석 - <b>등록인원 35명 이상</b> * 등록인원 35명 미만 과(전공) 제외, 전공심화 제외					교학1팀 (교무) 협조		본부 선발	
		성적우수장학 2종 (생활비)	800,000									
		성적우수장학 3종 (생활비)	500,000									
20	등록금	생활복지장학1종 (등록금감면)	수업료 100%	■ 선발기준 : 등록금 선입금 기간에 국가장학 소득분위(0~2) 장학생 중 1유형 수혜자 (공통사항) <b>교내장학금 기준에 적합자</b> ① 직전학기 12~15학점 이상 -18학년 이전 입학 : 15학점 이상 필수이수 -18학년 입학 부터 : 12학점 이상 필수이수 ② 74점 (평점평균 2.00점) 이상의 성적 *유의사항 : 생활복지장학1종으로 등록금감면 받거나, 수업료 전액 수혜자는 장학금으로 전액 등록금감면 받았으므로 <b>후지급 신청자격 없음</b> 유형①<국가장학 수혜자> 국가장학 소득분위(0~2) 장학생 중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자 ■ 선발기준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0~2)이면서 교내장학금 기준에 적합하나 * 소득분위 심사가 지연되거나 신입생으로 생활복지장학1종으로 등록금 선입금 받지 못한 학생 ■ 제출서류 : 없음 유형②<국가장학 미수혜자> ①-1. 국가장학을 신청하여 <b>소득분위가 0~2분위로 확인</b> 되나, 성적 또는 수혜횟수 초과등의 사유로 국가장학을 받지 못한 학생 ■ 제출서류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방법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장학금→증명서발급→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발급→발급하기 ①-2. 국가장학 미신청자로 <b>소득분위가 확인 되지 않으나, 신청자 본인이 장학금 신청일 기준 정부에서 인정하는 경제사정 관련자(기초생활 수급자격)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b> ■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				선입금		본부 선발	
		생활복지장학1종 (학생지급)	수업료 100%									
21	등록금	생활복지장학2종	1,500,000	■ 선발기준 : 신청자 본인이 장학금 신청일 기준 정부에서 인정하는 경제사정 관련자(차상위계층 수급자격)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제출서류 : 정부에서 인정하는 경제사정이 곤란함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중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②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③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④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⑤ 차상위 관련 확인서 : 차상위차량대상자 ⑥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⑦ 차상위 계층 확인서 : 차상위 계층 대상자 ■ 제출서류 발급처 * 본인 명의의 된 증명서 제출 ① 기초/차상위 서류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정부24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② 장애인 증명서류(본인 명의 장애인 증명서)-읍면동주민자치센터, 정부24						학과 신청	해당자 신청 필요	
		생활복지장학3종	1,000,000 직계가족 동시재학									
22	등록금	생활복지장학3종	1,000,000 직계가족 동시재학	■ 선발기준 : 본인 및 직계가족(배우자, 형제자매 포함) 동시에 재학하는 경우 한 명에게만 지급됨 * 다만, 동시에 재학하는 인원이 3인 이상인 경우 지급 기준은 장학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직계가족 중 한명만 교내장학금 신청 * 1학기 재학 하는 경우만 해당 (지급일자 기준 직계가족 중 한명이 휴학상태인 경우 탈락) ■ 제출서류 : 직계가족 학생의 <b>국제대학교 재학증명서</b> , 직계가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b>가족관계증명서</b> ■ 선발기준 : 본인 및 직계가족(본인, 배우자, 형제자매 포함)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 종합장애 정도로 확인 - (중증) 정도가 심한 장애로 표시 - (경증)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표시 ■ 제출서류 : 장애인증명서, 직계가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b>장애인증명서 인정 불가</b>	●					해당자 신청 필요		
			1,000,000 본인 또는 직계가족 장애중증/경증									
23	등록금	생활복지장학4종 (학생지급)	수업료 100% 또는 일정금액	■ 선발기준 : 국가장학 소득분위(0~8) 장학생 중 학업지속이 어려운 자에게 학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b>저소득층을 우선하여 장학금 지원</b> * 학생복지, 장학위원회 심의를 통해 장학예산에 따라 지급함 * 장학예산에 따라 기준금액은 수업료 100% 또는 일정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음						본부 선발		
24	등록금	희망장학금	일정금액	■ 선발기준 : 가정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져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학생복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자 * <b>학생복지, 장학위원회 심의를 통해 장학예산에 따라 지급함 &lt;선발예시&gt;</b> - 소득분위 3분위로 국가장학금 최대금액지원 해당자이나, 타학교에서 편입하면서 수혜횟수가 초과되어 국가장학금 [거절]된 학생 - 가정형편(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져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출서류 : 경제사정이 곤란함을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①-④의 항목을 모두 제출해야 인정) - 증명서류 : ① 학교장 추천서 ② 학교 회의록 ③ 본인 자술서 ④ 가정형편(상황)이 곤란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예 : 활동내용, 통장사본, 병원입원증명서, 소득금액, 국가장학 소득구간 통지서 등)						본부 선발		
			일정금액									
25	등록금	재난지원금	일정금액	■ 선발기준 : 필요시 별도 계획 수립 후, 학생복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자					2학기 필요시	본부 선발		
26	대가성	국가근로장학금	일정금액	■ 제출서류 : 월별 출근부 학생직업서 제출 - 출근부 관리 : 행정부서, 학과 ■ 국가근로장학금(교내근로, 기관근로) ■ 행정부서근로장학(교내근로)					매월지급	본부 선발		
		행정부서근로장학	일정금액									

# 2022학년도 교내장학 운영 세부 계획 및 1학기 교내장학금(4차) 신청 안내

2022-07-29  
학생복지. 장학위원회

연번	장학 성격	구분	기준금액	선발기준/제출서류	1차 등록대체	2차	3차	4차	비고	비고	신청 방법
						05.31	06.29.	8.16			
27	생활비	마일리지장학1종	700,000	■ 선발기준 : 비교과·인성교육센터 프로그램 이수자로 마일리지에 따라 지급 ■ 지급기준 -1종(마일리지 70점 이상 누적자) -2종(마일리지 50점 이상 누적자) -3종(마일리지 30점 이상 누적자) ① 마일리지 장학금 지급 대상은 재학생(단, 당해학기 성적을 이수한 휴학생은 지급 가능)에 한하며, '장학금액 및 대상인원, 장학금 지급 기준 마일리지 포인트'는 당해 장학금 지급예산 범위를 고려하고 상대평가하여 결정 ② <b>마일리지 별 장학금 지급 기준은 장학 예산에 따라 학생복지.장학위원회를 통해 변동 될 수 있음</b> ■ 제출서류 : 비교과·인성교육센터 마일리지 장학금 지급 요청 서류	/	/	●		비교과인성교육센터 장학생 추천		학과 신청
		마일리지장학2종	500,000								
		마일리지장학3종	300,000								
28	생활비	봉사장학금 1종(생활비)	1,500,000 (총학생회장)	■ 선발기준 : 학과선발 * <b>특이 학회장, 부학회장 변동한 경우→교학2팀(학생) 변동 요청 후 승인</b> ■ 세부기준 ① 총학생회 부장(6명) - 총무, 기획, 복지, 체육, 홍보, 인권 ② 총학생회 차장(5명) - 기획, 복지, 체육, 홍보, 인권 ③ 대학신문방송국(학보사, 방송국) - 학보사(2명) : 편집부장, 기획부장 - 방송국(2명) : 실무국장, 총무국장 ④ 폐과예정 학회장은 2학년 반대표를 검적하고 장학금 신청 시에는 봉사장학금 2종(학회장)으로 신청 * <b>봉사장학금 중복 시 상위 장학금 지급</b> <예시①> 학회장이면서 학보사 기획부장을 하는 경우 → 상위 장학인 봉사장학금 2종 지급, "봉사장학금 8종:학보사 부장" 지급불가 <예시②> 학과 부학회장 이면서 방송국 실무국장인 경우 → 봉사장학금 8종 한번만 지급(2개 이상의 직책을 맡고 있어도 한번만 지급)	/	/	●	●			학과 신청
		봉사장학금 2종(생활비)	1,000,000 (총학생회 부회장)								
		봉사장학금 3종(생활비)	800,000 (총학생회 부장)								
		봉사장학금 8종(생활비)	300,000 (총학생회 차장)								
			300,000 (학과 부회장)								
			300,000 (학과 총무)								
			300,000 (학과 반대표)								
		300,000 (학보사)									
		300,000 (방송국)									
29	포상성	장애학생도우미장학금	1,000,000	■ 선발기준 :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도우미 지원계획에 따라 선발 선발된 학생은 장애학생의 교육지원 및 학습편의를 위해 도우미로 활동하며 * <b>학생복지.장학위원회의 활동일지 작성평가 후 장학금 지급여부 결정</b> ■ 제출서류 :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장애학생 도우미 활동지 제출	/	/	●		장애학생 지원센터 협조		학과 신청
30	생활비	특별 장학금	일정금액	■ 선발기준 : 학생복지.장학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된 학생 - 학교의 명예 및 홍보가 된 학생 등(장학규정 특별장학금 내용 참조) - 외국인 유학생 관리(4명, 학기당 1,000,000원) - 학식위원회 (학기당 300,000원) - 기타 ■ 제출서류 - 학식위원회는 학기가 끝난 후 총학생회를 통해 학식 모니터링 결과보고 제출	/	/	●	●			본부 선발 학생 생활관 협조